

<자격증 인정 기준>

등급별	S등급	A등급	B등급	C등급	D등급
인정 시간	80시간	60시간	40시간	30시간	15시간
상시 학습 인정 자격증	○기술사·기능장 (국가기술자격) ○변호사 ○공인회계사 ○변리사 ○법무사 ○세무사 ○감정평가사	○기사 (국가기술자격) ○직업상담사 1급 ○사회조사분석사 1 급 ○임상심리사 1급 ○사회복지사 1급 ○컴퓨터활용능력 1 급 ○청소년상담사1급 ○청소년지도사1급 ○미술치료사 ○정신보건간호사 1 급 ○응급구조사1급 ○태권도 4단이상 ○유도 4단이상 ○검도 4단이상	○산업기사 (국가기술자격) ○직업상담사2급 ○사회조사분석사 2 급 ○임상심리사2급 ○사회복지사2급 ○컴퓨터활용능력 2 급 ○워드프로세서1급 ○청소년상담사2급 ○청소년지도사2급 ○미술치료전문가 ○정신보건간호사 2 급 ○응급구조사2급 ○태권도 1~3단 ○유도 1~3단 ○검도 1~3단 ○간호조무사 ○정 보 기 술 자 격 (ITQ) A등급 ○한자능력검정시험 1급	○기능사 (국가기술자격) ○사회복지사3급 ○컴퓨터활용능력 3급 ○워드프로세서2급 ○청소년상담사3급 ○청소년지도사3급 ○수련감독미술치료 전문가 ○정보기술자격 (ITQ) B등급 ○한자능력검정시험 2급	○워드프로세서3 급 ○정보기술자격 (ITQ) C등급 ○한자능력검정시 험 3급

- 비고 : 1.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이 위 목록에 열거된 자격증 중 직렬 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에 인정하여야 함
2. 동일한 연도에 동일 종류의 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 인정함
(예시 : 정보처리산업기사 기보유자가 정보처리기사를 취득 시, 정보처리산업기사는 인정하지 않음-기 입력된 경우에는 인정시간을 0시간으로 처리)
3. 상위등급 자격증을 기 보유한 자가 동일 종류의 하위등급 자격증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그 하위등급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
4. 국가기술자격(기술사·기능장·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)이란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자격증을 말함